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-24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26일  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가.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

1. 상 호 :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, 신도농업협동조합, 부천시흥  
원예농업협동조합, 금촌농업협동조합, 통영농업협동조합

2. 인가업무

인가업무 단위	금융투자업의 종류	금융투자상품의 범위	투자자의 유형
11-13-1	투자매매업 (인수제외)	집합투자증권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
2-13-1	투자중개업	집합투자증권	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

※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1]

3. 인가조건

- 11-13-1의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
- 2-13-1의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채무증권인 집합투자기구(단,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비율은 100분의 30 이하)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중개에 한함

4. 인 가 일 : 2024. 1. 18.